

의안번호	2207460
의 퇴 인	이훈기 의원
회 답 일	2025. 1. 22.
추계번호	24B6128

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미디어교육 기본계획 수립,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 운영 및 지원, 디지털미디어교육에 대한 평가 등을 수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1억 6,200만원(연평균 2억 3,2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디지털미디어교육 기본계획 수립 (안 제6조)	60	0	0	60	0	120	24
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 회 및 행정적·재정적 지원(안 제7조 및 안 제11조)	198	190	198	204	212	1,002	200
디지털미디어교육에 대한 평가(안 제12조)	40	0	0	0	0	40	8
합계	298	190	198	264	212	1,162	232

주: 1. 재정수반요인 별로 가정한 사업 추진 방식 및 사업 단가 등의 변동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2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
3.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미디어교육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 디지털미디어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(제1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, 장애인, 저소득층,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디지털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2	안 제6조(디지털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)	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디지털미디어교육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함(제1항) 시행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디지털미디어교육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(제4항)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6항)	의무규정
3	안 제7조(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)	디지털미디어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(제1항)	의무규정
4	안 제11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디지털미디어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디지털미디어 관련 사업자에게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5	안 제12조(디지털미디어교육에 대한 평가)	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미디어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·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디지털미디어교육 평가지침을 마련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6	안 제13조(디지털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의 양성)	방송통신위원회와 시행기관은 디지털미디어교육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7	안 제14조(디지털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)	시행기관은 국민에게 다양한 디지털미디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디지털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연구·개발·보급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시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·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
		제2항에 따른 기관·단체의 범위와 그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
8	안 제15조(디지털미디어교육 기관 등에 대한 지원)	방송통신위원회와 시행기관은 디지털미디어교육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방송통신위원회와 시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디지털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또는 디지털미디어교육 관련 민간단체 간 협의체의 구성·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3조(디지털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의 양성)	—	현행 사업 존재 — 제정안 시행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사업 확대 여부 및 확대 규모를 알 수 없음
2	안 제14조(디지털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)	—	
3	안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— 디지털미디어교육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4	안 제15조(디지털미디어교육 기관 등에 대한 지원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제정안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디지털미디어교육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 및 민간단체 간 협의체의 운영을 지원할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지원 대상 단체 및 지원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 -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제정안과 유사한 사례로 2021년까지 운영되다 폐지된 사업 중 소외계층 단체 지원 사업을 운영한 사례가 있음(6.25백만원x16개 단체=100백만원)
5	안 제6조(디지털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)	○	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6	안 제7조(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)	○	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7	안 제11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	○	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정안에 따른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의의 업무 지원 등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지원 인력 2명 증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8	안 제12조(디지털미디어교육에 대한 평가)	○	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의 일부 조항은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, 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확대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[표 2] 제정안과 현행 사업 비교

(단위: 백만원)

조·항(조제목)	현행 사업		
안 제13조(디지털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의 양성)	사업명	사업개요	2025
	(내역)미디어 역량교육 강화	미디어강사 양성 및 연수	47
안 제14조(디지털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)	사업명	사업개요	2025
	(내역)미디어 역량교육 강화	미디어교육 연구	27

자료: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

- 본 추계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조항을 제외하고 안 제6조(디지털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), 안 제7조(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), 안 제11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, 안 제12조(디지털미디어교육에 대한 평가)에 대한 비용을 추계함
- (디지털미디어교육 기본계획) 제정안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디지털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,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계기간 중 1차 및 4차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 - (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) 제정안에 따라 디지털미디어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어야 하므로, 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 참석 수당 등을 반영함

- 제정안이 위촉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수를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, 국회 및 교육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사람 12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, 민간위원을 12명 위촉하고, 회의를 연 2회(상·하반기) 개최하며, 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회의참석 수당으로 1인당 30만원¹⁾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. 기타 회의 장소 대여 및 회의 비품 마련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존 회의실을 활용하거나 이미 편성된 운영경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
 - 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에 따라, 제정안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교육위원회의 업무 지원 등을 위해 「방송법」 제90조의2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²⁾에 지원 인력 2명 증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추가한다고 가정
 - (디지털미디어교육에 대한 평가) 제정안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미디어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·효율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미디어 교육 평가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므로,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계기간 중 1차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- 지원 인력 증원 등의 추계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³⁾ 등 적용
-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1) 기획재정부의 「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에 따르면,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,000원을 지급하되,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,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,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·식비·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또는 일반수용비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

2) 「방송법」 제90조의2(시청자미디어재단)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.

3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(2024.10.) 명목임금상승률(%)

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3.6	3.9	3.8	3.8	3.8	3.8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□ 디지털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(안 제6조)

- 교육계획 수립 관련 중장기 계획 용역 사례를 참고하면,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억 2,000만원(연평균 2,400만원)으로 추계
 - － 문화재청의 2021년 문화재 재난예방 안전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,000만원 집행 사례를 참고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단가를 6,000만원으로 가정

[표 3] 디지털미디어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기본계획 수립	60	0	0	60	0	120	24

주: 향후 용역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(안 제7조) 및 행정적·재정적 지원(안 제11조)

- 제정안에 따라 위원회에 민간위원을 12명 위촉하고, 회의를 연 2회(상·하반기) 개최하며, 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회의참석 수당으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할 경우 위원회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는 연 720만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
 - － 미디어교육위원회 회의참석비: $12\text{명} \times 30\text{만원} \times 2\text{회/연} = 720\text{만원/연}$
-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에 따라, 제정안에 따른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의 업무⁴⁾를 「방송법」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지원한다고 가정하고, 이

4) 안 제7조(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)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제12조에 따른 디지털미디어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
3. 디지털미디어교육과 관련된 정책의 소관 조정 및 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
4. 디지털미디어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
5. 디지털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디지털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를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인력 증원(2명)을 위한 재정소요를 안 제11조에 따라 국가(방송통신위원회)가 지원한다고 가정

- (인건비) 시청자미디어재단의 2025년도 예산 기준 1인당 인건비 6,617만원 및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적용
- (기본경비)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인건비 대비 비율(2025년도 예산 기준 29%) 적용
- (자산취득비) 국회예산정책처의 「법안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」에서 조사된 5,892천원(2020년 공공기관 기준)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
- 자산취득비는 위원회 지원이 시작되는 해인 2026년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
- 제정안에 따른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0억 200만원(연평균 2억원)으로 추계

[표 4]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위원회 운영비(A)	7	7	7	7	7	35	7
위원회 지원비용(B)	191	183	191	197	205	967	193
인건비	137	142	148	153	159	739	148
기본경비	40	41	43	44	46	214	43
자산취득비	14	-	-	-	-	14	3
합 계(A+B)	198	190	198	204	212	1,002	2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디지털미디어교육에 대한 평가(제12조)

- 제정안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미디어교육 평가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4,000만원(연평균 800만원)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
 - 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 미디어교육 정책 사업 실태분석 및 정책체계 개편방안 연구(2018, 40백만원), 방송환경변화에 따른 방송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(2021, 50백만원), 재난방송에 대한 평가 및 평가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(40백만원) 사례를 참고

[표 5] 디지털미디어교육 평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디지털미디어교육 평가지침 마련	40	0	0	0	0	40	8

주: 실제 평가 방식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제정안 중 현재 수행 중인 재정사업과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배아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디지털미디어교육 관련 현행 사업 현황⁵⁾

□ (사업개요) 전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통해 국민이 미디어에 쉽게 접근하여 올바르게 이해·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

□ (사업명 및 예산현황)

(단위 : 백만원)

세부사업명	내역사업명	내내역사업명	사업내용	2025예산
시청자미디어 재단 지원	미디어 역량교육 강화	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	- 시청자미디어센터 상설 미디어교육 - 찾아가는 미디어교육(초중고 학교, 복지관 등) -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운영	4,638
		미디어교육 전문성 강화	- 미디어강사 양성 및 연수 - 미디어교육 연구 - 미디어교육 간행물	120
합 계				4,947

자료: 방송통신위원회

5)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자료